원금 **손실가능** 상품

퇴직연금 가입자 거래신청서
(DC/기업형IRP)

본인확인	판매직원	담당	책임자

※ 편입하는 상품에 따라 원금손실가능

전 산 인 자 란

1. 기본정보

년 월 일

성명		생년월일	
회사명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		

※ (200번 등록/변경)당행 최초 거래 고객인 경우 또는 기존 고객정보 변경 시 아래 추가 정보 작성			
휴대전화	□ SKT □ LG U+ □ KT □ 기타	이메일 주소	@
자택주소			
직장주소	직장명, 부서까지 기재해 주시면 우편물이 보다 정확하게 배송됩니다.		
자택전화		직장전화	
우편물 수령처	□ 자택 □ 직장 □ 원치않음	전화 연락처	□ 휴대폰 □ 자택 □ 직장 □ 원치않음

* 우편물 수령처를 '원치않음'으로 선택하신 경우라도 퇴직연금 관련 필수통지는 발송됩니다.

2. 통지수신

아래에서 선택하신 통지 외 법적통지[가입자 교육자료 발송, 디폴트옵션 적용 관련 안내, 법령에 의한 상품매매 불능 또는 위험자산 한도초과, 운용현황보고서(분기별) 등]은 수령동의여부에 관계없이 우편, 알림톡(LMS), 이메일 등으로 발송됩니다.
당행 고객정보를 통하여 발송하므로 반드시 고객정보 상의 통지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기통지방법	원리금보장상품(정기예금 등) 만기도래 시 전월 통지 발송	□ 이메일 □ 알림톡(LMS)
서비스 통지 제외 요청	입금예정상품 또는 보유상품 등록/변경 안내, 부담금 입금 안내, 연금수령관련 안내 등 이메일 또는 알림톡(LMS)로 발송되는 기타 알림 통지를 원치 않으시는 경우 발송제외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통지 발송제외 신청 : □ 신청(미발송) □ 신청안함(발송)
약관 변경 통지	퇴직연금 운용 및 자산관리약관이 변경되는 경우 통지	□ 알림톡(LMS) □ 이메일 □ 수신거부
해피콜	투자상품 매수하는 경우에만 필수 선택 ※ 일정횟수 이상 응답하지 않으시는 경우, 손님이 선택하지 않은 방식으로도 실시됩니다.	□ 전화(휴대폰) □ 온라인(모바일 웹)

3. [선택] 입금예정상품 운용지시

입금예정상품 미등록 시, 최초 입금된 적립금은 입금 다음 영업일 통지 후 2주 간 별도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 사전지정운용방법에 따라 적립금이 운용됩니다. 이후 입금되는 추가 적립금은 별도 통지 없이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됩니다.

1) 계속성 운용지시(등록 후 입금되는 부담금에 대한 운용지시)

구분	상품명	매수비율(%)
기업 부담금 (퇴직금)	상품명 전체 자필기재	자필기재
	상품명 전체 자필기재	자필기재
	상품명 전체 자필기재	자필기재
	상품명 전체 자필기재	자필기재
	상품명 전체 자필기재	자필기재
	기업부담금 매수비율 합은 100%	
개인 부담금	□ 개인부담금에 대하여 기업부담금(퇴직금)과 동일한 운용지시(체크 후 아래 작성 생략)	
	상품명 전체 자필기재	자필기재
	상품명 전체 자필기재	자필기재
	상품명 전체 자필기재	자필기재
	상품명 전체 자필기재	자필기재
	상품명 전체 자필기재	자필기재
	개인부담금 매수비율 합은 100%	

※ DC 가입자의 가입자 개인부담금 최초 납입시 연간입금한도(연간 1,800만원 한도 내) 설정필요["항목등록변경신청서" 별도 제출하여 등록 필요]
※ 위의 상품 개수 초과 시 "퇴직연금 입금예정상품 등록/변경 신청서[별지]"에 추가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5-20-0025(3-1) (2025.09 개정)
(보존년한 : 해지일로부터 10년)

하나은행

2) 일회성 운용지시(등록 후 최초 입금 건에 한하여 일회성 운용지시하는 경우에만 기재)

부담금 구분	☐ 기업부담금(퇴직금) ☐ 개인부담금	
상품명		**매수비율(%)**
상품명 전체 자필기재		자필기재
상품명 전체 자필기재		자필기재

4. [디폴트옵션 지정시 작성] 투자권유희망 여부(사전지정운용방법(디폴트옵션) 지정시 투자권유희망 여부를 파악하여야 합니다.)

■ 가입자가 사전지정운용방법(디폴트옵션)을 지정하는 경우 투자권유 희망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가입자가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경우 금융회사는 적합성 원칙* 준수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적합성 원칙(금융소비자보호법 제17조) : 소비자의 재산상황, 금융상품 취득·처분 경험 등 정보를 파악하고, 소비자에게 부적합한 금융상품의 계약 체결 권유를 금지

☐ **투자권유를 희망함 : "투자자정보확인서" 작성**

☐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음 : 투자상품 가입 불가(디폴트옵션 상품은 위험도 "초저위험"만 가능)**

[가입자 자필기재 : 아래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 **]**

가입자는 아래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읽고 상단에 확인 내용을 자필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본인은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2) 가입자가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입자가 설명을 요청하지 않으면 금융회사는 설명의무(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에 따른 설명으로 금융상품의 중요사항을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본인은 이에 대해 설명 듣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3) 금융회사는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가입자의 별도의 의사가 있기 전까지 투자권유를 할 수 없음을 이해하였습니다.

5. [디폴트옵션 지정시 작성]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상품 지정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이란? 퇴직연금 DC/IRP 가입자가 본인의 적립금을 별도의 개별 상품을 선택하여 운용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지정한 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을 운용하는 제도입니다. 디폴트옵션 상품은 아래의 상품 중 1개만 선정하실 수 있으며, 업체가 규약에 명시한 포트폴리오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선택(1개)	상품명	디폴트옵션 적용 위험도	상품구성
☐	하나은행 디폴트옵션 적극투자형 포트폴리오 1	고위험(2등급)	집합투자증권(100%)
☐	하나은행 디폴트옵션 적극투자형 포트폴리오 2	고위험(2등급)	집합투자증권(100%)
☐	하나은행 디폴트옵션 적극투자형 BF 3	고위험(2등급)	집합투자증권(100%)
☐	하나은행 디폴트옵션 중립투자형 포트폴리오 1	중위험(3등급)	원리금보장상품(25%)+집합투자증권(75%)
☐	하나은행 디폴트옵션 중립투자형 포트폴리오 2	중위험(3등급)	원리금보장상품(20%)+집합투자증권(80%)
☐	하나은행 디폴트옵션 중립투자형 포트폴리오 3	중위험(3등급)	원리금보장상품(25%)+집합투자증권(75%)
☐	하나은행 디폴트옵션 안정투자형 포트폴리오 1	저위험(4등급)	원리금보장상품(40%)+집합투자증권(60%)
☐	하나은행 디폴트옵션 안정투자형 포트폴리오 2	저위험(4등급)	원리금보장상품(50%)+집합투자증권(50%)
☐	하나은행 디폴트옵션 안정형 포트폴리오	초저위험(5등급)	원리금보장상품(100%)
☐			

6. 금융소비자 구분에 따른 의무 이행 확인(대리인의 경우 "가입자"를 기준으로 작성)

금융회사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상품의 중요한 사항을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해야 하며, 설명한 내용을 이해하였음을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설명의무 이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오니 매수하는 상품별 해당 금융소비자 구분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복수의 상품 매수시 해당 소비자구분 모두 체크).

예금성 상품 (정기예금, 디폴트옵션 안정형)	일반금융소비자	☐ 미성년자 ☐ 피성년후견인 ☐ 피한정후견인 ☐ 만 65세 이상 고령자
	전문금융소비자	☐ 만 19세 이상~만 65세 미만 성년자 ☐ 전문금융소비자이나 상품설명을 희망
보험성 상품(GIC)	☐ 일반금융소비자	
투자성 상품 (집합투자증권, 디폴트옵션 안정투자형, 중립투자형, 적극투자형 등)	일반금융소비자	☐ 일반투자자(투자자정보확인서에서 일반투자자 선택)
	전문금융소비자	☐ 전문투자자(투자자정보확인서에서 전문투자자 선택)

1) 설명의무 이행 확인 : 선택하신 개별 상품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을 설명 듣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설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설명을 이해하였다는 기재를 하는 경우 소송이나 분쟁발생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입자 자필기재 : 설명 듣고 이해함 **]**

2) 계약서류 제공 의무 : 선택하신 개별 상품에 관하여 계약서*, 약관**, 상품설명서*** 일체를 수령받았음을 확인합니다.
계약서류를 제공받지 않을 경우 추후 권리행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류 수령방법	**약관 및 상품설명서**	**☐ 서면 수령 ☐ 이메일 ☐ 알림톡(발송실패시 LMS 발송)**
	계약서	**'퇴직연금 가입자 거래신청서(DC/기업형IRP)' 사본 수령**

* 계약서 : 퇴직연금 가입자 거래신청서(DC/기업형IRP) 사본
** 약관 : 개별상품 약관 *** 상품설명서 : 개별 상품(투자)설명서 및 디폴트옵션 포트폴리오/이율보증형보험/금융투자상품 상품설명서

[가입자 자필기재 : 계약서, 약관, 상품설명서를 수령함 **]**

하나은행

7. 고객 유의사항

상품 매매에 따른 유의사항 확인	• 상품의 매매신청시 거래일이 다음 영업일로 순연되어 매매됩니다(원리금보장상품의 경우 부담금이 입금된 다음 영업일에 고시된 금리가 적용됩니다(해당 시점 금리를 확인하시려면 pension.hanabank.com에 사업자 공시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상품에 따라 매매에 소요되는 영업일이 상이하므로 매매완료일을 고려하여 상품 매매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정기예금 : 다음 영업일, 수익증권 등 금융투자상품 : 개별 상품 투자설명서 매입/매도기준일 +1영업일) • 원리금보장상품(정기예금, 이율보증형 보험)의 경우 만기일 이전 해지 시 중도해지이율 적용으로 수익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디폴트옵션 유의사항 확인	• DC/IRP에 입금예정상품을 지정하지 않고 적립금을 납입하였을 때로부터 2주 이내 별도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사전지정운용방법(디폴트옵션 상품)에 따라 적립금을 운용합니다. 만기가 있는 상품(정기예금, GIC 등)으로 운용방법을 선정하여 해당 상품의 만기가 도래한 경우, 만기일로부터 4주가 지난 시점까지 별도의 운용지시가 없으면 가입자에게 통지하고, 통지 후 2주 이내 별도 운용지시가 없는 경우 사전지정운용방법(디폴트옵션 상품)으로 만기자금을 운용합니다. 이 경우 통지는 알림톡, 이메일로 발송되며 발송이 불가한 경우 추가적으로 DM으로 발송됩니다. • 적립금 납입일 또는 상품 만기도래일로부터 사전지정운용방법(디폴트옵션 상품)으로 매수되는 시점까지 만기 자금은 금리가 낮은 [현금성 자산]으로 운용됩니다. • 가입자는 언제든지 법에 따라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6주(입금예정상품을 지정하지 않고 입금한 경우 2주)간 의 대기기간동안 가입자는 본인이 원하는 상품으로 운용지시를 할 수 있으며, 사전지정운용방법(디폴트옵션 상품)으로 운용 중인 적립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도하여 다른 상품으로 매수할 수 있습니다. • 사전지정운용방법(디폴트옵션 상품)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공하는 상품으로 은행은 사전지정운용방법(디폴트옵션 상품)을 변경할 수 있고, 변경 시점 가입자에게 변경 내용에 대하여 통지합니다. 통지를 받은 가입자가 다른 운용방법을 선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은행은 변경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날부터 가입자의 적립금을 변경된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합니다. • 은행은 입금예정상품을 지정하지 않고 여러 번 입금한 경우에도 최초 입금 시에만 가입자 통지와 대기기간을 적용하고, 이후 입금된 적립금에 대해서는 즉시 사전지정운용방법(디폴트옵션 상품)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입자가 동일한 상품으로 운용지시를 하였으나, 납입 주기로 인하여 만기가 여러 번에 거쳐 도래하는 경우, 이를 동일한 상품으로 간주하여 최초 만기시에만 가입자 통지와 대기기간을 적용하고, 이후 만기 도래분부터는 만기 도래 즉시 사전지정운용방법(디폴트옵션 상품)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 가입자는 사전지정운용방법 내 구성 상품에 대해 개별적인 운용지시를 할 수 없으므로, 디폴트옵션 포트폴리오를 매도하는 경우 내 구성 상품의 비중대로 이루어집니다. • 정기예금이 포함된 경우 만기일 이전 해지 시 중도해지이율 적용으로 수익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원리금보장상품 예금자 보호 확인	• 퇴직연금(DC,IRP)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대하여 다른 보호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1억원까지"(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합산) 보호됩니다. • 저축은행 정기예금의 투자한도는 저축은행별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1억원까지이며, 다른 금융기관 및 복수로 퇴직연금(DC,IRP) 거래가 있는 경우 가입자 본인이 전금융기관을 합산하여 저축은행별 투자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운용하여야 합니다.
금융투자상품 (집합투자증권 등)에 대한 유의사항 확인	• 당사는 위험성, 수익성, 수수료, 해지방법 등 금융투자상품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반드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듣고, 투자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집합투자증권은 운용결과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가입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환매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수익증권 매매시 개별 투자설명서상 기준가 적용일자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의 기준가 적용일자는 다음 영업일로 순연됩니다. • 퇴직연금 감독규정에 따라 원리금보장운용방법과 증권에 대한 분산투자 등으로 투자위험을 낮춘 운용방법 외의 금융투자상품 비중은 가입자별 전체 적립금의 70%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ETF 매매에 대한 유의사항 확인	• 상품 매매 신청시 거래일이 다음 영업일로 순연되어 매매됩니다. (D+1영업일 체결, D+3영업일 자금 결제) • 상품 매매 시 수량(좌수) 기준으로 거래되며 미체결된 금액은 금리가 낮은 현금성(대기)자산으로 운용됩니다. • 상품 매도(D일) 후 다른 ETF를 매수하는 경우 D+1영업일에 가능하나, ETF 외 상품을 매수하려면 D+4영업일에 거래가 가능합니다. • 유동성이 풍부하지 못한 ETF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환금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고,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장 폐지가 될 수 있습니다. • 지급(퇴직/계약이전, 해지 등) 거래 중 보유하신 ETF의 분배금이 발생할 경우 예정된 지급일보다 일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기타 유의사항안내	■ **수수료 납입 안내** : 퇴직연금 계약서(운용관리계약 부속협정서 및 자산관리신탁계약 부속협정서상 명시된 수수료율 참조)에 의거 매년 계약응당일(최초 부담금 입금일자) 기준으로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DC 개인부담금, 기업형IRP 개인부담금 : 적립금 차감 / DC 회사부담금, 기업형IRP회사 부담금 : 회사 별도납.
금융소비자 보호 안내	■ **청약철회권, 위법계약해지권, 민원처리 및 분쟁조정절차에 관한 사항은 개별 상품설명서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당행의 「자료열람요구에 대한 처리 절차」에 의거하여, 은행이 기록 및 유지 관리하고 있는 계약체결 및 이행에 관한 자료 등에 대해 열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 **퇴직연금 내의 제공 상품은 개별 상품 제공기관에서 개발 및 관리하며, 상품 도입 및 제도운영 전반에 관하여 하나은행 연금사업단에서 관리합니다. 이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상담이 필요하시면, 하나은행 금융소비자보호센터(1599-1111, 1588-1111), 상품별 제공 금융회사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kebhana.com)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센터(국번없이 1332) 또는 e-금융민원센터(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은 하나은행의 퇴직연금 DC/기업형IRP 가입 및 상품등록에 대한 내용 및 유의사항에 대하여

[가입자 자필기재 : 설 명 을 듣 고 이 해]하였기에 본 신청서의 내용과 같이 하나은행 퇴직연금에 가입 신청합니다.

가입자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 이 계약서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하나은행

<은행보관용>

『하나은행 디폴트옵션 안정형 포트폴리오』 상품설명서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에 의거, 은행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되며,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의 주요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
◈ 사전지정운용제도란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과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자가 퇴직연금 운용상품을 스스로 선정 및 운용지시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지정된 운용방법(디폴트옵션)으로 운용하는 제도를 말하며, 디폴트옵션 상품은 고용노동부 심의위원회 심의 및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공됩니다.
◈ 이 디폴트옵션 포트폴리오는 다수의 원리금보장상품으로 구성되는데, 이 상품설명서는 개별 상품의 상품설명서와 별도로,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판매사가 가입자에게 안내해야 하는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포트폴리오 편입상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개별 상품의 약관,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디폴트옵션 포트폴리오는 일반 예금과 달리 원금의 일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로 인한 손실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대하여 다른 보호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1억원까지" (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합산) 보호됩니다.
◈ [주의] 가입자께서 설명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 기록을 남길 경우, 추후 권리 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설명의무 이행 확인

가입하신 금융상품에 대해 판매직원이 설명한 내용과 이 설명서의 내용은 동일합니다.	작성일자	
	판매직원	(인/서명)
상품설명서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 듣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가입자	(인/서명)
	대리인	(인/서명)

1. 가입정보 및 투자위험등급의 의미

상품명		하나은행 디폴트옵션 안정형 포트폴리오		
판매회사가 정한 디폴트옵션 위험등급		초저위험 (5등급)		
해당 위험등급으로 정해진 이유		개별 구성상품의 위험등급을 구성비중별로 가중평균한 포트폴리오 위험등급 적용		
금융상품의 상세 내용		상품제공기관이 작성하고 판매직원이 제공한 예금거래 기본약관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동성 위험	중도환매 불가	중도환매시 비용발생	중도환매 허용	※ 중도환매 수수료 관련 세부내용은 상품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사항없음	해당	해당	

디폴트옵션 위험등급	초고위험 (1등급)	고위험 (2등급)		중위험 (3등급)	저위험 (4등급)	초저위험 (5등급)
투자설명서상 펀드 위험등급	매우높은위험 (1등급)	높은위험 (2등급)	다소높은위험 (3등급)	보통위험 (4등급)	낮은위험 (5등급)	매우낮은위험 (6등급)

디폴트옵션 포트폴리오 위험등급	적정투자성향	개별 상품 가중평균 등급주)	유의사항
초고위험 (1등급)	공격투자형	1 ~ 1.8 등급	위험선호도가 (매우)높은 투자자를 위한 상품으로서 시장평균 수익률을 훨씬 넘어서는 (매우)높은 수준의 투자수익률을 추구하며, 이를 위해 자산가치 변동에 따른 손실위험을 적극 수용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 입니다.
고위험 (2등급)	적극투자형	1.9 ~ 2.6 등급	투자원금의 보전보다는 위험을 감내하더라도 높은 수준의 투자수익실현을 추구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중위험 (3등급)	위험중립형	2.7 ~ 3.4 등급	투자에는 그에 상응하는 투자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예·적금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면 일정 수준의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저위험 (4등급)	안정추구형	3.5 ~ 4.2 등급	투자원금 손실위험은 최소화하고,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수준의 안정적인 투자를 목표로 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초저위험 (5등급)	안정형	4.3 ~ 5 등급	예금 또는 적금 수준의 수익률을 기대하며, 투자원금에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예 · 적금/이율보증형보험은 초저위험으로 분류됩니다.

주) 디폴트옵션 포트폴리오의 위험등급은 개별 구성상품의 위험등급을 구성비중별로 가중평균하여 적용합니다.
※ 위험등급은 운용실적과 시장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5-20-0032(8-1) (2025.09 개정)
(보존년한 : 해지일로부터 10년)
준법감시인 사전확인필 제 2025-비예금-03923 호(2025.08.07)

하나은행

2. 디폴트옵션 포트폴리오 구성상품 상세 내용

상품명	하나은행 디폴트옵션 안정형 포트폴리오	디폴트옵션 위험등급	초저위험(5등급)
고용노동부 승인번호	제 2022-010호	고용노동부 승인일자	2022년 11월 2일

운용전략	대상 가입자의 특성 및 투자위험도 등을 고려해 최대 3개의 원리금보장 상품으로 구성합니다.		
구성상품	신한은행 디폴트옵션 정기예금 (3년만기)	국민은행 디폴트옵션 정기예금 (3년 만기)	기업은행 디폴트옵션 정기예금 (3년 만기)
상품제공기관	신한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구성비율	35%	35%	30%
금리	※ 포트폴리오 구성상품의 금리는 매월 변동되는 항목으로 가입시점에 제공되는 상품 자료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도해지 수수료	※ 만기 전 해지시 중도해지이율(특별중도해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중도해지이율)적용. 상세한 내용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 참조		
예금자보호 여부	대상(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대하여 다른 보호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1억원까지"(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합산) 보호됩니다.)		
유의사항	•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 또는 개인형퇴직연금(IRP)에 가입하였을 때로부터 2주 이내에 가입자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사전지정운용방법(디폴트옵션)에 따라 적립금이 운용됩니다. 가입 후 만기가 있는 상품(정기예금, 이율보증형 보험계약 등)으로 운용방법을 선정한 경우에는 해당 상품의 만기일로부터 4주가 지났을 때 통지하고 통지한 날로부터 2주 이내 가입자의 별도 운용지시가 없는 경우 사전지정운용방법에 따라 적립금이 운용됩니다. • 자산배분 비중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포트폴리오의 위험등급이 변동되는 경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상품의 투자설명서에 적시된 운용방법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는 등 부득이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변경승인을 받아 포트폴리오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당행)는 사전지정운용방법의 변경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가입자에게 변경 사실 등을 통지하고, 이를 희망하지 않는 가입자는 스스로 다른 운용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변경 승인 후 14일이 지난날부터 퇴직연금사업자(당행)는 기존 가입자의 적립금을 변경된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이전하여 운용해야 합니다. • 사전지정운용방법에 따라 적립금의 일부 또는 전부가 운용될 경우, 운용하고 있는 전체 퇴직연금 적립금의 위험도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전지정운용방법 적용대상금액(신규 입금 또는 만기도래금액 등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되는 경우)이 1만원 미만인 경우 해당 금액은 현금성대기자산으로 운용됩니다. • 예금/이율보증형보험 신규일(재예치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된 개별 상품별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3. 유사한 금융상품과 구별되는 특징

• 디폴트옵션으로 적립금이 운용 중인 가입자는 언제든지 다른 운용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디폴트옵션은 3개 이내의 상품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으며, 포트폴리오 구성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디폴트옵션은 그 자체를 하나의 상품으로 간주하므로, 가입자는 포트폴리오 내 구성 상품에 대해 개별적인 운용지시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가입자가 디폴트옵션 포트폴리오를 매도하는 경우 포트폴리오 내 구성 상품의 비중 대로 이루어집니다.
• 하나은행 디폴트옵션 안정형 포트폴리오는 만기해지 포함 3회에 한하여 분할매도가 가능합니다.

5-20-0032(8-2) (2025.09 개정)
(보존년한 : 해지일로부터 10년)
준법감시인 사전확인필 제 2025-비예금-03923 호(2025.08.07)

하나은행

4. (발생 가능한 불이익 사항) 민원 · 상담이 빈번하여 숙지가 필요한 사항

Q1. 기존 가입자도 디폴트옵션 상품을 반드시 선정해야 하나요?

퇴직연금 가입자의 디폴트옵션 상품 선정은 기존 적립금의 운용방법 등과 관계없이 반드시 이행해야하는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따라서 기존 가입자와 신규 가입자 모두는 1개 디폴트옵션 상품을 선정해야 합니다.

Q2. 디폴트옵션 상품 지정 후 부담금을 납입하면 바로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운용되나요?

퇴직연금 가입 후 최초 납입하는 부담금에 대해서는 가입자통지와 2주간의 대기기간이 지난 후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운용됩니다. 이후에 납입하는 부담금은 별도의 가입자통지와 대기기간 없이 바로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운용됩니다. 만약 최초 부담금이 아직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운용되지 않은 상태(2주간의 대기기간 중)에서 2회차 부담금이 납입될 경우 가입자통지는 생략하고 최초 부담금이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운용되는 시점에서 2회차 부담금도 함께 운용됩니다.

Q3. 디폴트옵션 상품을 지정하면 기존 상품 만기일에 바로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운용되나요?

기존 상품 만기 후 4주가 지난 시점까지도 가입자가 운용지시를 하지 않는 경우, "만기가 도래한 적립금이 2주 후 사전지정운용방법(디폴트옵션)으로 운용됨"을 통지받게 됩니다. 통지 후 2주가 지났음에도 별도의 운용지시가 없는 경우 사전에 지정하신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운용됩니다. 즉, 기존 상품 만기 후 6주 동안 운용지시를 아니하는 경우에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운용됩니다.

Q4. 디폴트옵션 상품을 지정하면 예금 등 기존의 원리금보장상품 만기 자동재예치는 어떻게 되나요?

사전지정운용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기존의 원리금보장상품 자동재예치는 불가합니다. 다만, 펀드와 원리금보장상품이 혼합된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운용중인 경우 편입된 원리금보장상품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자동재예치가 진행됩니다. 원리금보장상품으로만 구성된 디폴트옵션 상품의 경우 만기도래 시 가입자통지(4주) 및 대기기간(2주) 등 6주의 적용 절차가 진행됩니다.

Q5. 펀드와 같은 실적배당형 상품에 적립금을 투자한 경우에도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운용되나요?

만기가 없는 실적배당형 상품에 투자한 경우 디폴트옵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적배당형 상품 중에서 만기가 존재하는 상품에 대해 만기도래 후 별도의 운용 지시가 없는 경우 사전 안내를 거쳐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운용됩니다

Q6. 다수의 상품으로 구성된 디폴트옵션 상품에서 개별 구성상품을 각각 별도로 운용지시(매수/매도) 할 수 있나요?

포트폴리오는 그 자체를 하나의 상품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포트폴리오형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선택한 가입자는 자신의 적립금이 해당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될 때, 포트폴리오 구성 상품에 대해 개별적인 운용지시를 할 수 없습니다.

Q7. 디폴트옵션 상품으로의 운용을 중단하고 다른 상품으로 운용하기 위한 방법이 있나요?

가입자는 디폴트옵션으로 운용중인 적립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도하거나 다른 상품으로 운용하는 방법을 통해 옵트아웃(Opt-out)을 할 수 있습니다. 옵트아웃이란 가입자가 사전에 지정해둔 디폴트옵션 상품을 다른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바꾸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운용하던 적립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도하고 다른 운용방법으로 운용지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원리금보장상품의 경우 변경하는 시점에 따라 중도해지 패널티가 적용되어 약정된 금리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Q8. 디폴트옵션 상품 선정 이후 실제 적용시점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투자성향분석의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가입자의 투자성향이 사전에 지정한 디폴트옵션 상품과 달라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디폴트옵션 상품의 선정 시점과 적용 시점의 차이로 인해 투자성향이 기존과 달라지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기존에 선정한 디폴트옵션 상품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입자께서 희망하시는 경우 변경된 투자성향에 맞는 다른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변경도 가능합니다.

Q9. 디폴트옵션 상품을 운용할 때 부담해야하는 비용에는 무엇이 있나요?

디폴트옵션 포트폴리오 구성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5-20-0032(8-3) (2025.09 개정)
(보존년한 : 해지일로부터 10년)
준법감시인 사전확인필 제 2025-비예금-03923 호(2025.08.07)

하나은행

5. 투자자의 권리보호 안내

구분	내용
디폴트옵션 상품 승인취소에 따른 절차에 관한 사항	• 디폴트옵션 상품은 다음의 사유 등이 발생할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및 관련 법령, 규칙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심의 및 승인을 거쳐 취소될 수 있습니다. 1. 금융시장 변화에 대응하거나 자산관리와 운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위험등급이 변경되는 등 승인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가입자 보호가 긴급히 필요한 경우 • 이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당행)는 가입자에게 다음의 사항을 즉시 통지하여야 합니다. 1. 승인취소사유 2. 승인 취소된 디폴트옵션 상품의 해지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3. 다른 디폴트옵션 상품을 포함한 3가지 이상 운용방법에 관한 정보로서 사전지정운용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 • 통지를 받은 가입자가 다른 운용방법을 선정한 경우 가입자의 적립금은 해당 운용방법으로 이전하여 운용되며, 퇴직연금사업자(당행)는 적립금을 이전한 운용방법에 대한 정보를 가입자에게 제공합니다. 퇴직연금사업자(당행)의 통지에도 불구하고 가입자가 다른 운용방법을 선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입자의 적립금을 승인 취소된 사전지정운용방법과 같은 위험등급의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이전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입자의 적립금을 이전하여 운용한다는 사실과 이전한 운용방법에 관한 정보를 가입자에게 제공합니다.
위법계약해지권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위법계약 해지 사유가 있음을 고객이 서면 등으로 제시 하는 경우, 해당 계약은 위약금 등 수수료 부과 없이 해지가 가능 합니다. •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 없이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자료열람 요구권 안내	•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 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청취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 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 은행은 법령, 제3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민원처리 및 분쟁조정 절차에 관한 사항	• 본 상품에 대한 문의 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영업점, 고객센터(1599-1111)및 홈페이지(WWW.kebhana.com)문의 할 수 있으며, 분쟁이 발생할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6조 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1332)등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5-20-0032(8-4) (2025.09 개정)
(보존년한 : 해지일로부터 10년)
준법감시인 사전확인필 제 2025-비예금-03923 호(2025.08.07)

하나은행

본인확인	담당	책임자

[필수] 개인(신용)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비여신 금융거래]

(주)하나은행 귀중

* 당행과의 비여신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당행이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본 동의서는 비여신(금융) 거래(수신, 내 · 외국환, 전자금융, 현금카드, 신탁, 퇴직연금, 펀드, 방카슈랑스, 파생상품, 대여금고, 보호예수, 각종 대행업무 등)와 관련하여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1회만 작성하는 동의서로, 본 동의 이후 비여신(금융)거래 시 별도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수집 · 이용 목적	- (금융)거래관계의 설정 · 유지 · 이행 · 관리 - 온 · 오프라인 (금융)거래 연계 및 본인식별 -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 처리
보유 및 이용기간	**- (금융)거래 종료일로부터 5년까지 보유 · 이용** * 위 보유 기간에서의 (금융)거래 종료일이란 "당 행과 거래중인 모든 계약(여 · 수신, 내 · 외국환, 카드 및 제3자 담보 제공 등) 해지 및 서비스(대여금고, 보호예수, 외국환거래지정, 인터넷뱅킹 포함 전자금융거래 등)가 종료된 날"을 말합니다. * (금융)거래 종료일 후에는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 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한 목적으로만 보유 · 이용됩니다.
거부 권리 및 불이익	귀하는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위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금융)거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한" 필수적 사항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금융)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수집 · 이용 항목

■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 번호** 위 **고유식별정보** 수집 ·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개인(신용)정보 ■ 일반개인정보	- 성명, CI, 실명증표, 국내거소신고번호, 주소, 연락처, 직업군, 국적 - 고객ID, 접속일시, IP주소, 이용전화번호 등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수집정보 (전자금융거래에 한함)
■ 신용거래정보	- 상품종류, 거래조건(이자율, 만기 등), 거래일시, 금액 등 거래 설정내역정보 및 (금융)거래의 설정, 유지 이행, 관리를 위한 상담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위 개인(신용)정보 수집 ·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개인(신용)정보도 수집 · 이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 등 귀책사유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로 고객님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관계 법령 등에 따라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인 성명 : (서명)

년 월 일 대리인 성명 : (서명)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 부:_____, 모:_____ 는 위 본인의 법정대리인으로 위 본인의 개인(신용)정보 수집 · 이용하는것에 동의합니다.

*** 만 14세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는 필수사항입니다.** 법정대리인 성명 : (서명)

3-08-1294(1-1) (2025.08 개정)
(보존년한 : 금융거래종료일로부터 5년)

하나은행